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 자금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고객과 은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영업점 방문없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자금관리계좌)를 이용한 수시이체신청 등 당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2.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고객이 은행과 대면하여 개설한 고객 명의의 계좌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계좌를 말한다.
3. "수시이체신청"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내 녹취전화, 팩스, e-mail 등을 이용하여 자금관리계좌를 통한 예금 등의 해지 및 자금의 이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업점 방문"이라 함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은행 지점에서 은행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약정서를 제출하거나, 은행 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회신전화 연락처"란 은행이 고객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의 전화번호로서,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 약정서」에 기재된 유선·무선 전화번호를 말하며, 고객은 회신전화 연락처를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고객(또는 지정대리인)으로부터의 약정 체결시 요건)

- ① 고객은 은행 '자금관리서비스'를 약정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이 적용됨을 동의한다.
- ②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자금관리계좌'를 신고하고 본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4조의 업무지시 방법으로 대출신청, 기타 채무부담행위(질권 및 담보권 설정) 등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업무이외의 업무를 지시 할 수 없다.
- ④ 고객의 지시사항은 통장과 비밀번호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신전화 연락처를 사전에 은행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지시내용과 확인 내용을 녹취 할 수 있다.
- ⑤ 수시이체신청은 고객이 상기 각 항의 내용을 확인후 서비스를 가입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한 경우 수행될 수 있다

제4조(수시이체 신청 업무 지시에 관한 요건)

- ① 고객은 은행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협조한다.
 - 1. 전화에 의한 지시의 경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수시이체 신청서'의 항목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은행이 약정체결시 신고한 전화번호를 통해 지시내용 확인시 이에 응해야 한다.
 - 2. 팩시밀리에 의한 지시의 경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수시이체 신청서" 등을 은행이 지정한 팩시밀리번호로 송부하고 은행에 신청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전자 문서(e-mail)에 의한 지시의 경우,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은 "수시이체 신청서(항목내용에 의한 지시 포함)" 등을 은행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은행에 신청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전항의 내용에 따라 은행 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을 위하여 고객 의사에 관한 진위 여부 및 거래의 진정성을 유선 및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신규 개설 요청된 연결계좌의 금융상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약관의 교부 및 설명 등이 필요한 상품인 경우,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시사항의 확인 및 통지)

- ① 은행은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수령한 후, 해당 영업일 이내에 본 약관에 따라 고객이 지정한 '회신전화 연락처'로 연락하여 지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일내에 은행이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은행이 회신 전화를 하였으나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은행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경우 은행은 동 전화를 제1항에 의한 지시사항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다만,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이 응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처리시한이 임박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은행은 영업점장의 승인에 의해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시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없이 고객(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 ⑤ 은행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지시사항의 확인에 대한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⑥ 은행은 자금관리서비스 가입고객에게 매월 거래내역을 e-mail로 발송하고, 실행된 거래내역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은행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번호 관리)

- ①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자금관리계좌를 통하여 인출할 경우 비밀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본 서비스는 고객이 최초 가입 신청한 영업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의 자금관리

계좌는 이체거래만 가능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계좌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은행의 내부 통제지침에서 정한 비밀번호를 신고하는 절차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의 통지 의무)

고객은 본 약정서에 기재된 회신 연락처, 팩시밀리 번호, 기타 고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통지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제한)

①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이 고객 또는 지정대리인이 지시한 대로 지시사항을 처리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기회수익의 상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의 착오,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및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고객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체수수료 등 고객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0조(서비스의 해지)

본 약관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개별약관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에 따른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분쟁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